

□ 제정 전문(안)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전문(안)

제정 2021. 00. 00.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의 학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과 권익 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 적용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2.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중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해야 하는 사업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중 산학협력단장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원”이란 「서울대학교 학칙」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말한다.
2. “연구개발기관”이란 산학협력단과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4조 제2항에서 지정한 대학(원), 연구소 등을 말한다.
3. “지도교수”란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도교수 또는 사실상 그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 가. 본교의 학사·석사·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 등록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사람
 - 다. 가목의 **학생연구자** 중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5. “가족생활”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을 말한다.
6. “학생인건비”란 본교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7. “통합관리계정”이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본교 연구책임자 단위 또는 학과(부), 대학(원), 연구소(원) 등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8. “계정책임자”란 학생인건비를 계상한 연구책임자로서 산학협력단에서 통합관리계정을 설정해준 교원, 연구자 등을 말한다.
9. “담당기관”이란 계정책임자의 소속 기관 또는 연구비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학생연구자** 등록 등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연구참여확약”이란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연구자**, 계정책임자 및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 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4조(산학협력단의 의무) 산학협력단장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4조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 업무를 위임받아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에 관한 사항
5. 제3조 제10호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담당기관의 의무) 담당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학생연구자의 인적정보, 지급내역 등 학생연구자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제3조 제10호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관리,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3.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운영을 위해 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계정책임자의 의무) 계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4.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졸업요건,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제7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의 성실한 수행
2. 연구윤리 및 보안 등 연구 관련 규정 준수, 연구 참여에 관한 변동 사항 내지 특이사항 발생 시 계정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사유,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계정책임자, 담당 기관 및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4. 기타 연구참여확약서 상에 기재된 의무사항의 준수

제2장 학업과 연구 환경 조성

제8조(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환경 조성 및 지원) 본교는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를 위해 필요한 물적·지적·인적 자원 등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원에는 효과적인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기구, 적절한 공간, 학내·외 자원의 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제9조(연구·창작 기여에 대한 정당한 인정) ① 지도교수와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자신이 참여한 연구·창작에의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② 연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학생연구자를 포함한 참여 연구원의 저자 또는 발표자 표시 순서를 참여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며, 연구의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 합리적 관행과 공정성을 결정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건강하고 안전한 학업 및 연구 환경 보장) ① 본교와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구공간의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② 본교와 연구개발기관은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등에 따라 학생연구자가 화학물질, 가스, 병원체, 방사선, 분진, 소음, 진동, 레이저 등의 연구실 유해인자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본교는 학생연구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보건진료소, 대학생활문화원, 체육시설, 휴게시설, 상담센터 등을 통한 적절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용 가능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 ④ 본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학업 및 연구를 위해 필요한 휴식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이 외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과 학생연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상해보험 가입 관련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학업·연구와 가족생활 병행 존중과 지원) ① 본교는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와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가족생활의 병행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 ② 본교는 학생연구자가 임신·출산·육아·간병 등 돌봄 활동을 병행하며 학업과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

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12조(연간활용계획 수립) 계정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자 운영 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정책임자는 전년도 활용 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 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적정한 처우 보장) 본교는 학생연구자, 및 그 밖에 인건비성 경비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수행한 연구 내지 업무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참여확약서의 작성 및 관리) ① 산학협력단장,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체결하여야 하며, 연구참여확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구체적 역할 등 구체적 담당업무 (단,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 포함 불가)
2. 참여기간,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유용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확약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의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의 개인적 사정 발생
4. 학생연구자의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강요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적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8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산정) ① 학생인건비의 지급기준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지급률 100% 기준으로 금액은 [별표1]에 따른다.

- ②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6조 제1항에 따라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제19조(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 ①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② 계정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등을 고려하여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연구수당·기술료를 산정하는 등 연구참여정도와 연구성과가 분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생인건비 지급방법) ① 산학협력단장은 계정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②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수령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21조(학생인건비 관리)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운영현황 자체점검)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현황에 대해 최소 연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담당기관 및 계정책임자에게 관련 업무 협조 및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23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①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본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할 경우 형사제재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제5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 보호

제24조(차별금지과 평등) ① 본교 구성원은 학내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교 구성원은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학업·연구 과정 및 성과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본교는 장애가 있거나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경우 등의 이유로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수행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인격권 보장) 본교 구성원은 인격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폭언·폭행·성비위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삼가야 한다.

제26조(정보접근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①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연구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 또는 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 또는 담당기관은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본교는 대학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연구자**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상담 지원 및 구제절차 등) ① 본교와 대학원은 **학생연구자**가 학업, 연구 및 행정 절차 등에서 경험한 고충 및 인권침해를 상담하고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기구·절차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 관련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및 신고 창구와 후속 절차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본교는 이 규정의 이행 점검 및 **학생연구자**의 인권 상황 개선 등을 위하여 대학원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최소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부분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계정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산학협력단장 및 담당기관의 장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산학협력단장 및 담당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비공개 원칙 하에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총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 내지 기관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

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학생연구자**가 동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③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감사팀 등 기관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본교는 피해자 등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의 상담·조사·구제절차 이용 및 학업·연구 등의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⑤ 본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과의 공간을 분리하고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학업·연구·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⑥ 본교와 본 조의 상담 및 조사에 관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권리 구제를 위한 상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에 관한 정보와 사건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⑦ 본교는 인권침해 조사·중재·심의·징계 절차 및 관련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와 관련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비공개 원칙 하에서 절차 진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절차 진행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인권침해 조사·중재·심의·징계의결 기간 및 절차를 포함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⑧ 본교는 하나의 사건을 다수의 기구가 관여하여 처리하는 경우 각 담당기구 간 소통과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제29조(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의 적립, 집행 등을 위하여 통합관리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기관 단위 통합관리기관 지정 이후부터는 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와 연구개발기관(학과, 단과대학, 연구관리기관 등) 단위로 병행 설정하여,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 할 수 있다
- ③ 산학협력단장은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한 학생인건비를 해당계정 수입액으로 사용한다.
- ④ 산학협력단장은 통합관리계정을 등록하고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①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학과, 단과대, 연구관리기관 등)의 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장은 소관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财源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 단위계정으로 적립 및 관리할 수 있다.

제31조(연구개발기관계정 인건비 지급 대상) ①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장이 해당 기관단위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학위과정별로 일정 금액을 균등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준액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균등지급대상자는 균등지급대상자 선정일 기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장이 균등지급 대상자를 별도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32조(연구개발기관계정 인건비 지급 대상) ①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장이 해당 기관단위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학위과정별로 일정 금액을 균등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준액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균등지급대상자는 균등지급대상자 선정일 기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장이 균등지급 대상자를 별도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부칙(2021. 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000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000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과정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20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다. 계절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

구분	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	합계 (세금 포함)
지급액	원	원
지급률*	%	%

*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 및 연구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
- 라. 학생연구자는 본교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및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생연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상해보험 가입 관련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에 따른다.
-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비위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의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나 목적으로도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 부당회수)하지 않는다.
-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제 절차를 보장받는다.
- 아.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닐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변경 내지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산학협력단장) : (서명 또는 인)

[별표1]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지급률 100%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월 2,500,000원
4. 석사·박사통합과정: 학기별 인정과정에 해당하는 금액